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패러글라이더 및 무인비행장치(드론) 등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는 내용으로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20052호, 2024. 1. 16. 공포, 2025. 1. 17. 시행)됨에 따라,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발생 시 조종사 등 관계자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고발생 내용을 통보토록 하는 등 개정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항공·철도 사고조사관증 발급부처명을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7. 23. ~ 9. 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 통보)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는 「한국교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.

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(앞 쪽)

**사고조사관증**
Aviation and Railway Accident
Investigator Certificate

사 진
3cm x 4cm

홍길동
Hong. G. D

국토교통부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

54mm×85.6mm[폴리염화비닐 (PVC)]

(색상 : 하얀색)

(뒤 쪽)

항공·철도 사고조사관증

성명(Name) :
생년월일(Date of Birth) : 년(y) 월(m) 일(d)
증명서 번호(Certi. No.) :
발행 일자(Issued Date) : 년(y) 월(m) 일(d)
유효 기한(Date of Expiry) : 년(y) 월(m) 일(d)

위 사람은 「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
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사고조사관임을
증명합니다.

항공·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직인

Chairman of the Aviation and Railway Accident
Investigation Board, Republic of Korea

☎ 044-201-5434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5조의2(초경량비행장치사고의</u> <u>통보)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</u> <u>생한 것을 알게 된 초경량비행</u> <u>장치의 조종자 또는 그 초경량</u> <u>비행장치의 소유자는 「한국교</u> <u>통안전공단법」에 따른 한국교</u> <u>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해</u> <u>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17조제1</u> <u>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한 것</u> <u>으로 본다.</u>